퇴직연금 전용 정기예금 특약

제1조(약관의 적용) 『퇴직연금 전용 정기예금』(이하 "이 예금"이라 합니다) 거래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『예금거래기본 약관』 및 『 거치식예금 약관 』을 적용합니다.

제2조(가입대상)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퇴직연금사업자(자산관리기관)입니다.

제3조(가입금액)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은행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.

제4조(계약기간))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, 6개월, 1년, 2년, 3년, 5년으로 거래처가 선택하며,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초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만기연장 합니다.

제5조(이자지급방법) 이 예금의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
제6조(이자) ① 이 예금은 신규일 및 재예치일(자동 만기연장일)을 이율 결정일로 합니다. 다만, 응당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응당일에 이은 첫 영업일을 응당일로 하고 응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월의 말일을 응당일로 합니다. ② 이 예금의 이자는 예치기간에 따라 이율 결정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셈하여 원금에 가산합니다.

제7조(재예치(만기 자동연장)) ①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, 이 예금의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합니다. 재예치기간은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하며, 재예치이율은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. 다만, 최초 신규시 자동재예치를 신청하는 특약을한 경우에는 매 만기 시마다 별도의 의사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특약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- 퇴직연금 전용 정기예금 재예치(만기 자동연장) 특약 -퇴직연금 전용 정기예금 특약 제7조 제1호에 따라, 동 예금의 매 만기 일마다 별도의
-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재예치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② 상기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재예치 의사 없음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

에는 자동으로 재예치 하지 않으며, 거래처의 별도 의사표시에 따라 처분합니다. ③ 재예치 후 만기전 해지시에는 재예치 후 만기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.

제8조(거래방식)이 예금은 퇴직연금 운용관리 시스템에 의해 신규, 지급, 해지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며 통장은 사용하지 않고 단말거래나 인터넷거래는 불가능합니다.

제9조(중도해지) ① 중도해지시는 신규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규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.

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제10조에 의합니다.

제10조(특별중도해지) ①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1. 퇴직, 연금지급 등 급여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- 2.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
- (1)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- (2)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
- ③ 그 밖에 천재·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
- 3.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
- 4.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
- 5.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
- 6. 수탁자의 사임
- 7. 당행을 수탁자로 하는 퇴직연금 계약이전 및 급여이전
- 8. 퇴직연금 계약에 의한 일정률의 수수료 지급 사유
- (1)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
- (2)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에 의한 자산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
- ② 위 ①항에 의한 사유로 특별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특별중도해지이율은 신규일 (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)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.
- 1. 계약기간이 3월, 6월, 1년인 계약 : 계약기간별 약정이율
- 2. 계약기간이 2년, 3년, 5년인 경우
- (1) 예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: 1년제 계약기간 이율
- (2) 예치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: 2년제 계약기간 이율
- (3) 예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: 3년제 계약기간 이율

제11조(중도인출(분할해지))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까지 허용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 3회까지 분할해지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분할해지의 경우에는 분할해지 횟수에서 제외됩니다.

- ② 중도인출시에는 신규일(재예치일)로부터 재예치일까지의 이율은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의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.
- ③ 최초 재예치전 중도인출일까지의 이율은 신규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합니다.
- ④ 재예치 후 만기 전 중도인출일까지는 최종재예치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 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.
- ⑤ 예금 신규 당일에는 중도인출(분할해지) 할 수 없습니다.

제12조(기타) ①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설정 및 담보제공, 지급정지 등은 불가하나,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.

② 상기 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정기예금 업무에 준하여 처리합니다.

부 칙

- 이 특약은 2005.12.29.부터 시행합니다.
- 이 특약은 2007. 6.18.부터 시행합니다.
- 이 특약은 2008. 8.11.부터 시행합니다.
- 이 특약은 2010. 8. 2.부터 시행합니다.
- 이 특약은 2013. 2.25.부터 시행합니다.
- (기 가입하신 고객은 기존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)